

의안번호	2202129
의 퇴 인	임오경 의원
회 답 일	2024. 7. 24.
추 계 번호	24B185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6조제1항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함 ※ 현행은 접근성 보장 의무만 규정 → 지속적 관리·감독 의무 추가	의무규정
2	안 제46조제2항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후단 신설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과 이용의 편의 증진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6조제1항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6조제2항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후단 신설	

2. 상세 사유

- 국가기관등이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 관리·감독(안 제46조제1항)
 - 개정안은 국가기관등¹⁾이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성 보장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것임
 - 안 제1항의 관리·감독이 대상이 되는 정보나 서비스는 국가기관등이 스스로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로, 안 제1항은 국가기관등이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도록 국가기관등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

-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안 제46조제2항 후단 신설)
 - 개정안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능정보서비스²⁾ 제공자에게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과 이용의 편의 증진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격차해소 기반조성 사업” 사업(2024년 예산 71억 7,900만원)을 통하여 지능정보기반 취약계층 적정기술 개발·지원, 개발업체 해외수출 지원,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음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표 1] 지능정보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내용	2024 예산
디지털 포용 제품·서비스 실증	· 원가 비중 및 수입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포용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현장 실증 지원 및 조기 상용화 지원 (3개 컨소시엄 선정)	750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1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하여 장애인·상이유공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추진(연 5,300대, 비용 80% 지원)	3,975
개발업체 해외수출 지원	· 국내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중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해외 관련 시장의 파급효과가 큰 박람회 및 전시회 등 참가 지원(연 6건)	100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운영	· 모든 국민이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가이드 및 콘텐츠 등을 개발·보급하는 플랫폼 구축·운영	87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확대 또는 신규 추진할 사업의 규모(신규 지원대상의 수, 지원 규모 등)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향후 확대 또는 신규 추진할 사업의 내용 및 확대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사업 현황³⁾

□ 주요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보조기기 보급 지원
- (정보접근성 제고) 웹·앱·키오스크에 대한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법·제도 정비, 실태조사,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개선 기술 개발·지원
- (2024년 예산) 7,179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3년 예산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출연금)	1,088
개발업체 해외수출 지원	100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운영	238
디지털 포용 제품 서비스 실증	750
정보접근성 제고(사업출연금)	2,116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운영	871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	300
웹 접근성 실태조사	200
정보격차 실태조사	582
정보 접근성 인증평가 지원	163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자치단체 경상보조)	3,975
합 계	7,17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중 발채

3) 일반회계, 1945-501